



2025년

발달지연 영유아 국가지원 종합안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년

발달지연 영유아
국가지원
종합안내서

본 책자의 내용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건강

영유아 건강검진	06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07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08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09
장애인의료비 지원	10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1

II 양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15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16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사업(영유아, 부모, 교사)	18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사업	19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20
장애아 보육료 지원	2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2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휴식지원프로그램)	23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25
장애아동수당	26
장애영유아 지원사업	27

III 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30
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경계선 지능)	31
언어발달지원사업	32

IV 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34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5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36

I.

건강

- 01 영유아 건강검진
- 02 발달장애인가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03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04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05 장애인의료비 지원
- 06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비용 전액 지급

영유아건강검진 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6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시각이상(사시)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시력검사	굴절이상(약시)						●	●	●
	청각문진	청각이상	●	●	●	●	●	●	●	●
	귓속말 검사	청각이상						●		
신체 계측	예방접종 확인	예방접종								●
	키	성장이상	●	●	●	●	●	●	●	●
	몸무게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체질량 지수	비만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	●	●	●		●	●	●
	영양	영양결핍(과잉)	●	●	●	●	●	●	●	●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	●						
	구강 문진	치아발육 상태			●					
	대소변 가리기	대소변 가리기				●	●			
	전자미디어 노출	전자미디어 노출		●		●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 위식증				●	●	●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 교육(보호자 및 유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관 방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등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인, 해당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

내용

-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전문적 지원
- (지역별 운영 현황)

지역	병원명	연락처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02-2072-1549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02-2228-6036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873
부산	부산온종합병원	051-607-0012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032-890-1051
경기	성남시의료원	031-730-4325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033-243-0303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33-742-2258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043-269-7878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063-259-3319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3555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064-717-2201

문의 지역별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문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대상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단, 9세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내용 언어·청각·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 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소득별 차등 지원

소득기준	지원금액(본인부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가중 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문의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장애아동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내용

- 연간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문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지원

선정기준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치료지원 대상자를 선정

내용

-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치료지원 대상자 신청이 가능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신청

문의

- 전화: 교육부(☎02-6222-6060)
- 온라인: 교육부 (<https://www.moe.go.kr>)

II.

양육

- 0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0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0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04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 05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사업(영유아, 부모, 교사)
- 06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07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 08 장애아 보육료 지원
- 0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 1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휴식지원프로그램)
- 11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12 장애아동수당
- 13 장애영유아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가족

* 9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발급받은 6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서(진단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

내용

- 힐링캠프: 가족, 인식개선, 동료상담 등 휴양·치유 캠프
- 테마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기관방문 등
- 자율여행: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지원금액 참여자 1명 당 비용 지원*

* 최대 지원금액: 당일 7만 5천 원, 1박 2일 15만 원, 2박 3일 24만 원 지원

* 지원금 초과 사용 시 참여자 부담

방법 지역별 수행기관에서 모집 ▶ 서비스 신청 ▶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정 ▶ 심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도)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신청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 이용

※ 지원시기는 수행기관별 상이

문의

-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

※ 홈페이지 메인화면-센터사업-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대상 9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내용

- 기본형: 발달장애의 생애주기별 장애특성 및 양육기술 제공
- 자율형: 지역특화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 자조모임형: 욕구 기반으로 부모교육 자율 운영

지원방법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교육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지원시기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별도 문의

문의

-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mainpage.do>)
- ※ 누리집 메인화면-센터사업-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개별상담: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지원금액 1회당 5만원(정부지원금 4만 원*, 본인부담 최대 1만 원)

* 월 정부바우처 지원액 16만 원

지원시기 상시

문의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 9세 미만 어린이는 장애 등록없이 신청 가능(단, 병원에서 발급받은 6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지참)

내용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지원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 ▶ 개인별지원계획 회의 ▶ 적합성 심사(시·군·구) ▶ 결과 안내 ▶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모니터링

*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 가능함

지원시기 상시

문의

-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mainpage.do>)

※ 누리집 메인화면-센터사업-개인별지원계획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사업(영유아, 부모, 교사)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양육자) 및 가정, 보육교직원

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을 통한 부모 및 보육교직원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 부모: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 연령별 양육정보, 양육태도 및 스트레스, 심리 및 정서 등

- 영유아: 영유아 건강·발달, 상호작용 및 기질, 심리 등

- 보육교직원: 상호작용, 스트레스, 심리 및 정서, 기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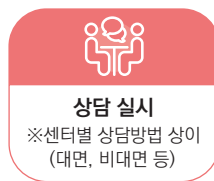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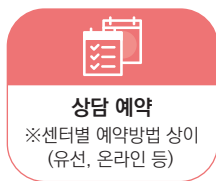
※ 필요시, 전문적 검사 도구 활용

※ 사업 운영 여부 및 사업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상이할 수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사업 이란?

영유아의 발달, 문제행동, 양육환경, 양육자 및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등
양육·보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적절한 지원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상담서비스입니다.

〈 사업 신청 방법 〉



문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entral.childcare.go.kr>) 및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QR코드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발달선별검사(K-DST)

영유아검진 3~8차까지 월령별 6개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 대해 평가

-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

내용 발달장애 진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로 부담한 비용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포함)

※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6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

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여 지정 검사기관 또는 원하는 검사 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 '지정 검사기관' 방문 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필요
... 보건소 발급

필요서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문의

-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유선 문의

- 온라인: 관할 보건소 누리집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검색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대상 관내 영유아 및 보호자,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내용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개입, 적절한 지원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사업 운영여부 및 사업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상이할 수 있음

- (영유아 지원)

- ① 발달지연 영유아 관찰 및 발견, 선별검사(K-DST 등)를 통한 정확한 원인 분석
- ② 심층검사 및 수준·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치료지원 연계, 상담, 필요정보 제공 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부모 지원) 부모 교육, 상담, 발달 및 육아정보 제공 등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지원 및 자녀의 특성에 따른 양육역량 강화 지원

- (교사 지원) 교사 교육, 발달상담 등을 통해 영유아 특성에 맞는 교수방법 사용 및 체계적 지원 도모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란

관찰과 평가를 통해 발달지연(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원인분석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과 장애 발전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entral.childcare.go.kr>) 및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QR코드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 지원 가능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 진단서 제출 관련 주의사항은 '복지로'사이트 참고

내용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 장애아반 편성아동: 58만 7천 원 지원
-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 58만 7천 원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문의

- 오프라인: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내용

-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놀이·신변처리·외출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
- 연 1,080시간 돌봄서비스 지원(월 160시간 이내* 원칙)
 - * 단,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의 사유로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필수)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금 지급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1,080시간 이내	연 1,080시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 없음)	12,180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4,870원	

지원시기 연중

문의

-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18개 사업시행기관
- 온라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broso.or.kr/dcsp>)

장애아가족 양육지원(휴식지원프로그램)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아가족*

* 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우선 지원

내용 교육·문화·상담 및 치료·자조모임·정보제공 등*

* 사업시행기관 별 프로그램 상이

지원금액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문의

문의

- (오프라인)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
- (온라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broso.or.kr/dcsp>)



참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8개 사업시행기관

연번	지역	기관명	대표번호
1	서울	(사)서울시장장애인부모회	02-356-4889
2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25
3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053-621-2600
4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032-818-2096
5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062-229-9701
6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042-488-9457
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2-242-1780
8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044-866-0180
9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031-239-6340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1
11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043-237-8304
12	충남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041-338-1762
13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063-901-1131
14	전남(동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4523
15	전남(서부)	(사)목포YWCA	061-244-1366
16	경북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054-701-0420
17	경남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070-7725-3967
18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064-725-1372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

지원시기

- 지원대상 장애아동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 외 지원대상: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장애아동수당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연령 등 세부 선정기준은 '복지로'사이트 참고

내용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금액 지원

지원금액

- 중증장애아동(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원
- 경증장애아동(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원

문의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 (그 외 대상자)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장애영유아 지원사업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내용 장애영유아 보육(통합보육) 관련 교육, 순회지원,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방법 제공

※ 사업 운영여부 및 사업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상이할 수 있음

- (교육 및 상담) IEP작성, 교수전략, 교육진단도구 활용법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실시
- (컨설팅) 보육환경 점검 및 상호작용 등 발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
- (어린이집 순회 지원)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치료순회, 상담, 수준별 개입 등)

장애영유아지원사업(취약보육지원사업)이란?

장애영유아지원사업(취약보육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 ① 장애영유아 돌봄을 위한 촘촘하고 질 높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 ② 부모님들이 안전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장애영유아보육
(취약보육)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장애영유아보육
(취약보육)
어린이집 컨설팅



장애영유아보육
(취약보육)
어린이집 순회지원

문의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 문의

※ QR코드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락처

III.

교육

- 01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02 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경계선 지능)
- 03 언어발달지원사업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대상

-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 국립특수학교 6개교, 국립대학 부설 학교 40학급
 -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기준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

신청방법

-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 신청

문의

- 전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
- 온라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https://www.moe.go.kr>)

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경계선 지능)



대상 부모

과정명 ‘배움이 느린 아이’와 함께하는 교육

교육내용

- 경계선 지능에 대한 내용(총 5차시로 구성)
 - 1차: 경계선 지능이란?
 - 2차: 혹시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일까?
 - 3차: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
 - 4차: 경계선 지능 자녀의 학교 생활
 - 5차: 경계선 지능은 장애일까?

신청방법 온라인: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On누리 누리집 (<https://www.parents.go.kr>)
▶ 교육온 ▶ 수강신청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On누리 (02-3780-9936)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

- (자격기준)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제공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 사용한 지도는 불가

지원금액

대상자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별 차등지원

소득수준	지원금액(본인부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문의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IV.

돌봄

- 0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0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03 최종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

내용

-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을 때, 최대 7일간 이용자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일시돌봄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낮 활동과 야간 돌봄 제공
 - 1년 최대 30일 이용 가능
 - 15일 이후 재입소 가능

이용금액

- 하루 이용료 3만 원(이용료 1만 5천 원+식비 1만 5천 원*)
 - * 식비는 한끼에 10,000원이며 하루 식비는 총 3만원임(본인부담금 1만 5천원+국비 1만 5천원)

지원시기 상시

방법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 (<https://www.broso.or.kr>)*
 - * 누리집 메인 화면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신청” 클릭
 - ** 이용 3일전까지 이용예약 가능하며,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로 전화신청 가능

문의

-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의 경우, 거주 지역 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문의
-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
 - ※ 누리집 메인화면-센터사업-긴급돌봄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 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내용

- 2 ~ 4인 소그룹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 체험, 자립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제공시간

- 월 ~ 토요일 9시 ~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월 66시간)

지원시기

연중

문의

- (오프라인) 바우처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서비스 이용 문의: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
 - ※ 누리집 메인화면-센터사입-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및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 24시간 개별 1:1 지원: 월요일~금요일(24시간 서비스)
 - *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주간 개별 1:1 지원: 월요일~금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 주간 그룹 1:1 지원: 월요일~금요일(오전9시~오후6시)
 - * 한 달에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지원시기 연중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선정조사
▶ 서비스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 통보 ▶ 결정 시 서비스 이용
 - * 해당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수의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수 초과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방법

-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
 - ※ 누리집 메인화면-센터사업-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2025년

발달지연 영유아
국가지원
종합안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